

목포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
----------	-----

제출년월일 : 2003년 11월 18일

제출자 : 목포시장

1.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안 제2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5. 관계법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6. 예산사항 : 해 당 없 음

7. 관련사업계획서 : 해 당 없 음

8. 입법예고 : 해 당 없 음

9. 사전협의

- 전남재정 13400-978(2003. 6. 23) 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

10. 기타참고사항 : 해 당 없 음

목포시 조례 호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다음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생 략)</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삽입)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삽입)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삽입)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삽입)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삽입)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4. (생 략)</p> <p>③ (생 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p> <p>· 고엽제 후유의증환자-----</p> <p>·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p> <p>----- · 고엽제후유의증환자-----</p> <p>-----)</p> <p>-----</p> <p>-----</p> <p>-----</p> <p>-----</p> <p>-----</p> <p>-----</p> <p>-----</p> <p>1.~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